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7. 25.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7. 2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5.)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미애 의원)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

저오고 있으며 관광 분야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발전 동력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및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현행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9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방문을 활성화하고 생활인구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의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아¹⁾ 숙박·식음·관람·체험·쇼핑 등 5가지 유형의 업체에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주민으로서

1) ‘대한민국구석구석’ 웹(<https://korean.visitkorea.or.kr/dgtourcard/>)이나 앱에서 발급

지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방문(재방문)을 유도하여 관광소비를 확대하도록 하려는 사업임.

해당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에서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4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고, 1,000여개 이상의 업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

(2525년 4월 기준, 44개 지역)

- 강원(8곳) : 평창군, 정선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태백시, 홍천군, 철원군
- 충북(5곳) : 옥천군, 단양군, 제천시, 괴산군, 영동군
- 충남(3곳) : 태안군, 예산군, 보령시
- 인천(1곳) : 강화군
- 경기(2곳) : 연천군, 가평군
- 전북(5곳) : 고창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김제시
- 전남(7곳) : 신안군, 영광군, 장흥군, 해남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 경북(6곳) : 고령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청도군, 의성군
- 경남(4곳) : 거창군, 하동군, 함천군, 밀양시
- 부산(3곳) : 영도구, 서구, 동구

그런데,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혜택 이용율은 감소하고 있고²⁾, 이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없어 지역 관광업체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건수 대비 할인 혜택 등 이용률은 2022년 13.87%, 2023년 6.04%, 2024년 3.12%로 감소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모두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업 시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발급 대상 지역 또한 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정적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나, 발급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급기관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발급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정하)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